

생활관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생활관은 학생들에게 공동생활을 통한 생활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영적성장을 장려하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생활관은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생활관이라 이름한다(이하 생활관, 고유명은 벨엘관).

제3조(소재) 본 생활관은 한국침례신학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개관기간) 생활관의 개관기간은 학칙에 규정된 수업기간으로 하되, 운영위원회를 거쳐 개관기간을 연장, 단축 또는 휴관할 수 있다.

제5조(사생생활규칙) 생활관장은 관내의 질서유지와 원활한 생활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사생생활 규칙을 따로 정한다.

제2장 생활관 운영위원회

제6조(설치) 본 생활관은 운영위원회를 두어 생활관 운영에 대한 기본방침과 제 규정을 결정한다.

제7조(구성)

1.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기획정보조정실장, 학생실천지원처장, 사무관리지원처장, 생활관장, 부관장(사감)으로 하고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하며, 위원장은 생활관장이 된다(단, 부관장이나 사감이 간사가 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및 보직임기까지로 한다.

제8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관 사업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2. 생활관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생활관 사생회 회칙 심의에 관한 사항
4. 납부금 징수에 관한 사항
5. 사생의 입사 및 퇴사에 관한 사항
6. 기타 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
7. 생활관 후원금 운용에 관한 사항

제9조(회의)

1.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 가. 정기회의는 매학기 시작 전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운영위원회는 주요업무를 심의할 경우 소속직원과 사생회의 의견을 수렴한다.
3.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3장 조 직

제10조(조직)

1. 생활관에는 생활관장과 부관장(사감)을 둔다.
2. 생활관 직원의 직제 및 인원은 생활관장이 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3. 생활관에는 신학대학원, 학부 사생회장과 사생회 회칙이 정하는 임원 및 층장을 둔다.

제11조(생활관장)

1. 생활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사생을 지도하고 생활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2. 생활관장은 생활관 당해 사업 연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 연도 개시 1개월 전에, 또한 사업 연도 개시 후 1개월 내에 전년도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3. 생활관 부관장(사감)은 관장을 보필하여 행정 및 학생지도 업무를 한다.

제12조(업무분장) 생활관의 업무분장은 사무분장 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입사 및 퇴사

제13조(입사자격)

1. 생활관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재학생에 한하며 품행이 단정하고, 공동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로서 입사절차에 따라 신청한 자 중 선발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 학부 졸업 예정자 중 신학대학원 입학 예정자는 정원 범위 내에서 ‘방학 중 사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14조(입사생 선발기준) 입사생의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된 기일 내에 입사원서를 제출한 자
2.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선 선발한다.
 - 가. 장애인
 - 나. 해외동포, 외국인
 - 다. 본 교단 목회자, 자녀, 사모(단, 별점 5점 미만자에 한함).
 - 라. 임원
 - 마. 1학기 신입생
 - 바. 10동은 생활관장이 판단하여 건강상의 이유로 10동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진단서 등 증명서류 확인).
3. 본 대학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학부모의 자녀는 정원의 2%이내에서 특별 선발한다.
4. 대전지역 이외의 학생을 우선 선발하되, 결원시 대전 지역 중 유성구, 중구, 서구를 제외한 지역(통학거리와 교통편 고려)의 학생을 우선 선발할 수 있다.

5. 우선 선발 대상 외의 학생은 직전학기 별점, 성적순에 의하여 선발한다.
(단, 1학기에 한해 신입생 10등 선발은 선착순 선발)
6. 신입생은 1차 추가합격자까지 신청자 전원을 선발한다.
7. 결원이 생길 경우 예비 입사자로 충원하고 미달일 경우 수시로 지원자를 받아 선발한다. (추가선발은 관장의 허가로 한다.)
8. 방학 중 입사는 직전학기 입사생 중 1차 선발하고, 미달일 경우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단, 별점 5점 이상자는 입사를 제한할 수 있다.)
9. 일반대학원, 상담복지대학원, 선교대학원은 후순위 선발한다(1차 선발 후 결원 시 선발).

제15조(입사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1. 학칙에 의해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생활관에서 퇴사처분을 받은 자(단, 관장이 판단하여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 후에 입사가 가능하다.)
3. 법정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
4. 휴학 중인 자
5. 전 학기 제 납입금의 체납자 및 대출도서를 반납하지 않은 자
6. 음주, 흡연 음란물 시청 및 유포 등 비신앙적 행위를 하는 자
7. 기타 생활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질병이나 정신적인 이유로 중간퇴사, 휴학한 경우 다음 입사 시에는 의 사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8. 신입사자중 생활관 오리엔테이션 불참자는 입사할 수 없다(단, 추가합격자나 관장이 판단하여 오리엔테이션 불참의 사유가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입사 후 오리엔테이션을 받을 수 있다).
9. 입사 후 무단 퇴사자와 관장면담 거부자는 향후 입사를 제한한다.
10. 누적 별점이 15점 이상일 경우 다음 학기 입사를 제한한다(학년 누적 점수).
11. 관장의 허락 없이 전열기구 반입 및 사용자는 그 다음 학기 입사를 제한한다.
12. 직전학기 예배 F자는 입사를 제한한다(단, 해당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

우 입사를 고려한다).

13. 다음 학기 졸업 예정자는 방학 중 생활관 입사를 제한한다.

※단, 타부서에서 요청한 학생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생활관 입사를 허용할 수 있다.

14. 생활관 입사 시 결핵검사서 등 건강검사서를 필요에 따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퇴사) 사생은 휴학 이외의 사유로는 자진 퇴사할 수 없다. 휴학 이외의 사유로 자진 퇴사할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퇴사원서를 제출하고 생활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자진 퇴사 후 1년 이내에는 재입사가 제한될 수 있다.

제17조(퇴사처분) 사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생활관장은 퇴사 처분하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학교등록 미필자
2. 사생수칙(금지행위)의 위반 및 사내질서를 문란케 한 자
3. 생활관에 제 납입금을 체납한 자
4. 제16조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자
5. 기타 공동생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8조(납부금)

1. 사생은 생활관 운영위원회 및 사생회에서 결정고지한 입사비, 사비 및 자율 경비를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입사비와 사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자율 경비는 사생회에서 결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3. 입사비, 사비는 2회 분납 가능하며, 2회 분납은 1학기는 4월 1일, 2학기
는 10월 1일까지 완납해야 한다.(단, 자율경비는 1회에 완납해야 한다).

① 분납은 1회 50%, 2회 50%이다.

② 1회 분납하고 완납지 못할 경우 차후 제한할 수 있다.

가. 사비는 개관 이후 4주 이내 100%, 8주 이내 80%, 12주 이내 60%, 12주 이후 입사자는 40%를 납부한다.

나. 개관 후 12주 이내, 휴학 및 취업(결혼) 및 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퇴사자는 환불(일할계산)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환불하지 않는다
(방학 중 사비는 6주 이내에만 환불가능하다).

다. 이외의 사유로 퇴사하는 자는 4주 이내 70%, 8주 이내 45%를 사비
에 한해 환불하고 8주 이후에는 환불하지 않는다(방학 중 사비는 2
주 이내 70%, 4주 이내 45% 환불한다).

라. 입사비와 자율경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4. 각 과정 생활관 최초 입사자는 소정의 입사비를 납부한다.

5. 관비 인상은 전년도 물가 인상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5장 사 생 수 칙

제19조(생활관 입사생의 의무) 생활관은 경건훈련의 도장임을 인식하고 다음 사
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1. 생활관에서 행하는 행사 및 경건훈련에 충실히 참여해야 한다.
2. 생활관 내에서는 어떠한 집회라도 관장의 허락 없이 할 수 없다.
3. 남자생활관에 여자의 출입을 금하며, 여자생활관에는 남자의 출입을 금한
다.
4. 외부인은 관장의 허락 없이 생활관에 출입 및 숙박할 수 없다.
5. 사생은 자기 방을 청결하게 하고, 주변청소 및 미화작업에 동참할 의무가
있다.

제20조(외출 및 외박) 사생은 매일 사생생활규칙이 정하는 폐문시간 이전에 귀
관해야 하며, 외박은 절차에 따라 외박계를 제출하고 관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21조(금지사항) 사생은 다음과 같은 금지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음주, 흡연, 음란물 시청 및 유포, 도박 행위 등 비신앙적인 행위
2. 허가되지 않은 전열기구 및 인화 물질의 사용 또는 무단 반입
3. 폭행, 소란 및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
4. 시설물의 무단이동 및 변형
5. 기물의 손상 및 파괴

6. 취사도구의 무단 반입
7. 낙서, 광고물의 무단전시 및 배포
8. 기타 생활관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제22조(위생)

1. 일반에게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환을 가진 사생은 관장이 수시로 격리나 퇴사를 명할 수 있다.

제6장 재산유지

제23조 생활관의 건물, 기타재산에 대한 파손 및 오손은 생활관장의 감정 및 배상방법에 따라 파손자가 배상해야 한다.

제7장 장학금 지급

제24조

1. 생활관 학부 임원은 신학과 기준 등록금의 1/3을 지급하며, 신대원 임원은 신대원 등록금의 1/3을 지급한다(단, 학부회장 및 총무는 등록금 지원하며, 신대원 회장은 신대원 등록금을 지원한다).
2. 생활관 임원 중 학부회장 및 총무, 신대원 회장 및 총무와 시설근로생은 생활관비를 지원한다.
3. 생활관은 시설 근로생 등을 해당 학기 사생과 방학 중 사생 중에 선발할 수 있으며, 해당 근로비를 근로월에 지급한다.
4. 방학 중에는 사생관리 및 근로를 위해 각 사생회 임원 중 1명씩과 시설 근로생을 둘 수 있으며, 방학 중 생활관비를 지원한다.

제8장 사생회 임원 자격

제25조(사생회 임원자격)

1. 학부 임원의 자격은 본 대학 3학년 이상 재학생으로 생활관에서 4학기 이상 생활한 자, 신대원은 본 대학원 2학년 이상 재학생으로 생활관에서 2학기 이상 생활한 자에 한한다.
2. 사생회 임원은 총 평점이 3.0이상이어야 한다(단서조항 삭제 2017.6.23.).
3. 입학 후 현재까지 모든 학기 대학예배 통과자이어야 한다.
4. 대학 및 생활관에서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이어야 하며, 입사 후 현재까지 누적 벌점이 학부는 8점 이하, 신대원은 5점 이하인 자이어야 한다.
5. (신설 2017.6.23.) 단. 임원구성이 어려운 경우, 사생회의 추천에 의하여 생활관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9장 후원금 사용 및 관리

제26조(후원금의 사용)

1. 생활관에 기부되는 후원금은 행정 절차를 거쳐 생활관 시설·기자재의 확충, 수선 충당금 및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2. 후원금 및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의 사용은 생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영수증 발급) 기부자가 관계법규에서 정한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기부자의 요청 시 총장 명의의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1. 본 규정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198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199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1995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1996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03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05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규정은 2006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규정은 200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규정은 2007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본 규정은 2008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14. 본 규정은 2009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15. 본 규정은 2009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16. 본 규정은 2010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17. 본 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18. 본 규정은 2011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19. 본 규정은 2011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0. 본 규정은 2012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1. 본 규정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2. 본 규정은 2013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3. 본 규정은 201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4. 본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5. 본 규정은 2017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6. 본 규정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7. 본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8. 본 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